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단12795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3560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단127952 판결

### 전문

####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김부권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김재환

변론 종결 2021. 3. 11.

판결 선고 2021. 5. 13.

###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7. 4.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7. 5.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재협의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C에게 6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7.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은 2017. 3. 20. D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7. 6. 20.로 정하여 빌렸는데, 같은 날 원고가 C의 D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 후 C은 D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를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8. 5. 31.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 및 구상금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C에게 1,209,734,765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6. 1.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아 C이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E는 1994. 5. 1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F(상속지분 3/9)와 자녀인 피고, G, C(각 상속지분 2/9)이 있다.

라. 피고는 2017. 4. 19.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2017. 4. 19.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G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에는 '1994. 5. 10. E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재산상속인 F, 피고, G, C은 상속재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G의 소유로 하며, F, C은 위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하고 이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4통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유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2017. 4. 17.'로 되어 있으며, F, 피고, G, C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마. 그 후 2017. 5. 23.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가 위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상속분할재협의서(갑 제13호증)에는 '1994. 5. 10. E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재산상속인 F, 피고, G,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협의하여 2017.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번에 상속재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고, F, G, C은 위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분할 재협의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 협의서 4통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유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2017. 5. 22.'로 되어 있으며, F, 피고, G, C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바. C은 2017. 4. 17. 및 2017. 5. 22. 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및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 F, G과 2017. 4. 17.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G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7. 5. 2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재협의를 각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2017. 4.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2017. 5. 22.자 상속재산분할재협의를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망 E의 상속재산으로 서울 소재 토지(상속재산 가액의 89%)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충주시 소재 토지(상속재산 가액의 11%)가 있었는데, 망 E의 사망 당시 서울 소재 토지는 망 E의 배우자인 F가 우선 상속받고 추후 자녀들이 상의하여 적절히 분배하기로 하였고, 고향인 충주시 소재 토지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 장남인 피고가 상속받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망 E의 사망에 따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대여금 및 구상금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인 1994. 5. 10.에 있었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 3. 판단

### 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및 재협의 성립 시기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의 상속재산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상속인들인 F, 피고, G, C 사이에 2017. 4. 17. F(상속지분 3/9), G, C(각 상속지분 2/9)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이를 전부 상속받고, F(상속지분 3/9), 피고, C(각 상속지분 2/9)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G이 이를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 그 후 2017. 5. 22. 망 E의 상속인들인 F, 피고, G,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F(상속지분 3/9), G, C(각 상속지분 2/9)이 위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이를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재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재협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5. 10. 상속인들인 F, 피고, G, C 사이에 이를 피고가 전부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3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1994. 5. 1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원인일자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기재하도록 한 대법원 등기예규 제438호 규정에 따라 등기 신청 시 망 E의 사망일자인 1994. 5. 10.을 원인일자로 기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부에 원인일자가 1994. 5. 10.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위 날짜에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및 사후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재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사후구상금채권은 비록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재협의 당시에 발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C의 D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실제로 연대보증일로부터 3개월 후의 변제기에 C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변제함으로써 사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사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재협의를 의해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C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각 2/9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재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재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병훈**

별지